

제8장 지급 및 자본이동

제8.1조 경상지급

양 당사국은 「국제통화기금협정」에 따라 양 당사국의 거주자 간에 국제수지의 경상 계정에 관한 모든 지급 및 송금이 자유교환가능통화로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, 이에 대하여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.

제8.2조 자본 이동

1.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하여, 양 당사국은 유치국의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직접 투자, 제7장(서비스 무역·설립 및 전자상거래)에 따라 자유화된 투자 및 그 밖의 거래, 그리고 그러한 투자 자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청산 및 본국 송금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해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약속한다.

2.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, 양 당사국은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국제수지의 자본 및 금융 계정에 관한 거래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특히 다음과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유치국의 법에 따라 보장한다.

가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거주자가 참여하고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상업적 거래와 관련된 신용

나. 금융 대부 및 신용, 또는

다. 지속적인 경제적 연계를 수립하거나 유지할 의도가 없는 법인에 대한 자본 참여

3.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을 저해함이 없이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거주자 간의 자본이동에 대하여 어떠한 새로운 제한도 도입하지 아니하고, 기존의 약정이 더 제한적일

되도록 하지 아니한다

4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증진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자본이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.

제8.3조

예외

그러한 조치가 동종의 조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자본이동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,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어느 한 쪽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가. 공공안보 및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, 또는

나.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
- 1) 형사 범죄나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, 또는 계약 불이행의 효과(파산, 지급불능 및 채권자 권리의 보호)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
- 2)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
- 3) 유가증권, 옵션, 선물 또는 그 밖의 파생상품의 발행, 유통 또는 거래
- 4) 법 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, 송금에 대한 재무보고 또는 기록보존, 또는
- 5)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

제8.4조

세이프가드 조치

1. 예외적인 상황에서 양 당사국 간의 지급 및 자본이동이 대한민국이나 영국의 통화정

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¹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, 엄격하게 필요한 자본이동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²는 관련 당사국에 의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³동안 취해질 수 있다.

2.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채택을 즉시 통보 받고 그 제거를 위한 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통보 받는다.

¹ “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대한 심각한 어려움”은 심각한 국제수지 또는 대외 금융상의 어려움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, 이 조에 따른 세이프가드 조치는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² 특히, 이 조에 규정된 세이프가드 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.

- 가. 물수적이지 아니할 것
- 나.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
- 다. 모든 규제 자산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장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달리 방해하지 아니할 것
- 라.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,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것
- 마. 일시적이며, 그러한 조치의 부과를 요구하는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폐지될 것, 그리고
- 바.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신속하게 공표될 것

³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초로 채택할 시점에 존재하는 상황 또는 동등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, 세이프가드 조치의 적용은 해당 당사국에 의해 한번 더 6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. 그러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어느 한 쪽 당사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, 그 당사국은 사전에 모든 제안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조율한다.